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정 보 통 신 진 흥 및 융 합 활 성 화
등 에 관 한 특 별 법 시 행 규 칙
일 부 개 정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임혜숙 (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개정이유

실증특례 사업자의 법령정비요청권과 임시허가 전환 등에 관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·시행(법률 제18872호, 2022. 6. 10. 공포, 12. 11. 시행)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의 위임규정을 정비함(제11조, 별지 제15호)
- 나.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 서식을 신설함(제12조, 별지 제16호)
- 다. 법령정비 요청서 서식을 신설함(제13조, 별지 제17호)
- 라. 법령정비 요청에 따른 연장확인서 서식을 신설함(제14조, 별지 제18호)
- 마.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 서식을 신설함(제15조, 별지 제19호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부처 협의 전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

제11조 중 “영 제42조의5제2항”을 “영 제42조의5제1항”으로 한다.

제12조부터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(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) 영 제42조의5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다.

제13조(법령정비 요청서) 영 제42조의5제3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.

제14조(법령정비 요청에 따른 연장확인서) 영 제42조의5제5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에 따른 연장확인서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다.

제15조(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) 영 제42조의5제8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다.
별지 제15호 서식 중 “제38조의2제4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5제2항”을 “제38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5제1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시	
신청인	회사명(성명)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 ※ 사업자(법인)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	
	주소		
	대표자	전화번호	
신규 기술·서비스	명칭		
지정번호		유효기간	
유효기간 연장신청 사유			

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38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·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성명

(서명 또는 인)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·서비스의 이용현황 및 실적에 관한 자료 2.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사유서 3.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지정서 사본							
처리 절차								
신청	→	접수	→	서류검토 및 필요시 시험·검사	→	유효기간 연장 결정	→	결과 통지
신청자		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		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		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		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

지정번호		지정연월일	
신청인	이름(회사명)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 ※ 사업자(법인)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	
	주소		
	대표자		
확인내용	명칭		
	주요내용		
	유효기간		
	조건		

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38조의5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5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(연장)확인서를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

직인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]

법령정비 요청에 따른 연장확인서

지정번호		지정연월일	
신청인	회사명(성명)	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 ※ 사업자(법인)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
	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(우편번호)		
	대표자		
지정 대상 기술·서비스	명칭 및 주요내용		
유효기간			
법령정비 요청일	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38조의5제3항에 따른 요청일		
책임보험 갱신 계획	- 정보통신융합법 시행령 제47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제출한 책임보험의 보험 갱신 계획서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에 따른 책임보험 등 증서 사본을 (유효기간 만료 전)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할 것		

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38조의5제7항,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5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제38조의5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봄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

직인

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

지정번호		지정연월일	
신청인	회사명(성명)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 ※ 사업자(법인)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	
	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(우편번호)		
	대표자		
지정 대상	명칭 및 주요내용		
기술·서비스			
법령정비	정비요청 법령(신청인이 정비를 요청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을 모두 기재)		
요청내용	신청인의 의견(법령정비 요청 이유, 제정·개정 방향 등을 포함하여 기재)		
법령정비 판단결과	[] 1. 「 . . . 」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.	[] 1-1. 임시허가 신청 대상입니다.	
		[] 1-2.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여 임시허가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	
	[] 2. 「 . . . 」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.		
	※ 임시허가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		
유효기간			
만료일			
그 밖의 안내사항	※ 법령정비 판단결과 임시허가 신청대상이라고 통지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날 중 늦은 날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37조에 따른 임시허가를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1. 법령정비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2. 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42조의5에 따른 유효기간(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연장된 유효기간)의 만료일 ※ 이 경우 임시허가 신청 절차는 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37조에 따르며, 임시허가 신청서 외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.		

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38조의5제4항부터 제6항까지,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5제8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
년 월 일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

직인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) 영 제42조의5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.	제11조(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) 영 제42조의5제1항----- ----- -----.
<u><신 설></u>	<u>제12조(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) 영 제42조의5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다.</u>
<u><신 설></u>	<u>제13조(법령정비 요청서) 영 제42조의5제3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.</u>
<u><신 설></u>	<u>제14조(법령정비 요청에 따른 연장확인서) 영 제42조의5제5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에 따른 연장확인서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다.</u>
<u><신 설></u>	<u>제15조(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) 영 제42조의5제8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다.</u>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	
연 락 처	(044) 202 - 6113